

교내연구개발규정

제정 : 2011.07.30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15.06.17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03.01

개정 : 2021.1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전반에 대하여 학문적 이론과 실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교내 연구비(이하 “연구비”라 한다)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1. 22.,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제2조(연구비의 종류 및 신청자격) 연구비의 종류와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논문연구비 : 년 간 1인 1편에 한함

2. 교재개발연구비 : 개발 교재 연구비 수혜 후 1년 경과자

3. 학술저서 출판 및 전시회 지원연구비 :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아니하고 교재 및 저서 출판, 국내외 특허, 해외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당해 년도에 발표한 전임교원 <개정 2015. 06. 17.>

4. 연구보조비 : 전임교원에 대하여 매월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 과세금액 및 비과세금액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5. 우수연구 지원 장려금 : 연구비 수혜에 관계없이 국제전문학술지(SCI, SCIE, SSCI, A&HCI) 또는 전국규모학술지(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정한 등재지)에 논문을 당해년도에 수록한 전임교원 <개정 2021. 12. 01.>

6. 정책 및 기타 연구비 :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<신설 2015. 06. 17.>

제3조(연구비의 지원 규모) 연구비의 지급총액 및 지급인원은 연구비지급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01.>

제4조(위원회)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한다. <개정 2015. 06. 17.>

제5조(연구비 신청) ①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연구비는 중복 수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총장은 교원의 대학발전에 대한 공헌도, 정책수립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신청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

③ 연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. <개정 2015. 06. 17.>

제6조(신청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한다.

1. 연구계획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수행의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2. 연구계획기간 중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
3.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본 연구비에 의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본 연구비의 지원을 받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논문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<개정 2021. 12. 01.>
5. 제14조에 의하여 연구비를 반환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<개정 2021. 12. 01.>
6. 정부 또는 기타 재단이나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당초 제출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(국비 해외파견연구 포함)
7. 정부 또는 기타 학술재단 및 교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8. 「학술진흥법 시행령」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<개정 2021. 12. 01.>
9. 학내외에서 징계 받은 자는 징계처분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10. <삭제 2014. 11. 01.>
11. 교원업적평가 D등급 연속 2회 이상 받은 교원 <신설 2020. 03. 01.> <개정 2021. 12. 01.>

제7조(연구자 선정) ① 연구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다만, 정책 및 기타연구과제의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. <개정 2015. 06. 17., 2021. 12. 01.>

②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전공계열별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06. 17.>

③ 연구과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. 다만, 총장이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
2. 연구의 창의성 및 적합성
3. 연구수행 능력
4.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
5.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등
6. 연구비 예산 및 배정액

제8조(연구기간) 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, 그 시작일은 연구비지원 결정일로 한다. 다만, 정책연구과제등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06. 17., 2021. 12. 01.>

제9조(연구비의 지급) ① 연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·후기로 구분하여 50%씩 지급한다.

1. 전기분 : 연구과제 결정 후
2. 후기분 : 중간보고서 검토 후

② 공동연구의 경우 인원비율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되, 1건에 대해서 100%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10조(연구비의 사용) ①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지정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

②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.

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구입한 기기, 비품 등은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학교자산으로 귀속 처리한다.

제11조(연구보고서 제출) 연구보고서 제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중간보고서 : 연구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(연구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)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(중간보고서) 및 별지 제4호 서식 연구비 사용내역서(전기분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2. 결과보고서 :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과보고서(실적물 포함) 및 별지 제4호 서식연구비 사용내역서(후기분)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논문연구

- (1)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1부 또는 원본대조가 가능한 별쇄본 1부
- (2) 학술지에 게재하지 못한 논문은 논문원본 1부

나. 교재개발연구: 저서 2권 <개정 2021. 12. 01.>

제12조(연구계획의 변경) 연구과제명,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유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[별지 제5호] 서식의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3조(연구결과의 게재 및 평가) ① 논문은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회지 또는 대학교의 논문집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연구결과 논문이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전국규모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. <개정 2014. 11. 01.>

③ 논문, 저서, 교재는 연구업적심사 규칙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심사하여 평가한다.

제14조(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)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06. 17.>

1.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2.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지급 받았을 때
3.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보고를 하였을 때
4. 제11조에 규정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
5. 연구결과 평가에서 불합격으로 평가되었을 때(다만, 이 경우에는 연구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, 그 결과 다시 불합격으로 평가되었을 경우)
6.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<개정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7. 동일과제로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때

제15조(학술저서지원) ① 출판 및 발표된 기간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저서(개인전) 및 국내외 특허로 하고, 저서의 분량은 200쪽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교내외 연구비 수혜로 작성된 출판물 <개정 2021. 12. 01.>
 2.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<개정 2021. 12. 01.>
 3. 기 출판 및 발표된 내용과 유사한 출판물(개정판 등) <개정 2021. 12. 01.>
- ② 지원연구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고, 교원 1인의 저서 1권 또는 개인전 1회와 논문 또는 특허1편을 각각으로 인정하여 지원(공동연구 경우 인원비율)한다. <개정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- ③ 교원별 연구비 지원간격은 각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6조(우수연구 지원) ① 연구비 수혜에 관계없이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전국규모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한하여 지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- ② 우수연구 지원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<개정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17조(준용범위)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국·공립대학교 연구비보조 지급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18조(지원기관의 표기) 연구비 수혜 이후에 발표되는 출판물에 반드시 “이 연구는 0000년도 대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” 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.

이 규정은 201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20 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 신청서

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관 리 번 호 | | | | 접수번호 | |
| 과 제 구 분 | | 일반연구(논문) | 교재개발연구() | 특별연구(논문, 특허,) | |
| 연 구 과제명 | 국문 | | | | |
| | 영문 | | | | |
| 연 구 책임자 | 성명 | | 직 명 | | |
| | 학과 | | 재직기간 | 년 월 일부터(년 월) | |
| | 전공 | | 세부전공 | | |
| 연구 참여자 | 공동연구원(연구책임자제외) 명 | | | 보조연구원 명 | |
| 연 구 기 간 |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| | | | |
| 신청 연구비 | 교내연구비(신청액) | 원 | 자비 부담 | 원 | |
| | 기타 지원금 | 원 | 총계(총소요액) | 원 | |
| 현재수행 연구과제수 | 교 내(편) | | 교 외(편) | | |
| <p>본인은 별첨 연구를 수행하고자 교내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며, 연구비 지원이 결정될 경우 학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연 구 책 임 자 : (인) 공 동 연 구 자 : (인) 공 동 연 구 자 : (인)</p> <p>첨 부 1. 연구계획서 1부. 2. 연구참여자 연구실적 1부. 3. 연구수행 계획서 1부. 4. 소요예산서 1부.</p> <p>대원대학교 총장 귀하</p> | | | | | |

[별지 제2호 서식]

20 학년도 교내연구비 중간 보고서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|
| 관 리 번 호 | | | | | | |
| 과 제 구 분 | 일반연구(논문) | | 교재개발연구() | | 특별연구(논문, 특허,) | |
| 연구 책임자 | 학과 | | 직명 | | 성명 | |
| 연 구 기 간 |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| | | | | |
| 연구과제명(국문) | | | | | | |
| 연구진행상황 및 연구수행 내용 | | | | | | |
| 참고 사항 | | | | | | |
| 위와 같이 교내연구비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. | | | | | | |
| 20 년 월 일 | | | | | | |
| 연구 책임자 : (인) | | | | | | |
| 공동 연구자 : (인) | | | | | | |
| 공동 연구자 : (인) | | | | | | |
| 대원대학교 총장 귀하 | | | | | | |

[별지 제3호 서식]

20 학년도 교내연구비 결과 보고서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관 리 번 호 | | | | | | |
| 과 제 구 분 | 일반연구(논문) | 교재개발연구() | | | 특별연구(논문, 특허,) | |
| 연구 책임자 | 소속학과 | | 직 명 | | 성 명 | |
| 연 구 기 간 |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| | | | | |
| 연구 과제명 | | | | | | |
| 연구결과개요 | | | | | | |
| 연구 결과의 활 용 방 안 | 교육 및 사회적 측면 | | | | | |
| | 학 술 면 | | | | | |
| 연구자의연구 분담내역 | 연구책임자 | | | | 공동연구자 | |
| 게재발표내역 또는 게재예정내역 | 학 술 지 명 : (발표 장소) 발간 연월일 : (발표년월일) 호 수 : 면 수 : | | | 참 고 및 건의사항 | | |

- 붙 임 1. 연구결과 실적물
2. 연구비 정산서 1부
3. 항목별 영수증 각1부. 끝.

위와 같이 교내연구비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연구책임자 : (인)

[별지 제4호 서식]

20 학년도 교내연구비 정산서

■ 연구비 사용 세부내역

(금액단위 : 원)

| 연번 | 항 목 | 당초예산① | 지 출② | 증 감①-② =③ | 비 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| 연구 활동비 | | | | |
| 2 | 연구보조원 수당 | | | | |
| 3 | 국내외출장 여비 | | | | |
| 4 | 인쇄비(수용비) | | | | |
| 5 | 재료비 | | | | |
| 6 | 연구기자재 구입비 | | | | |
| 7 | 기자재임차료(수수료) | | | | |
| 8 | 회의비 | | | | 회의록 작성 제출 |
| 9 | 공공요금 등 제잡비 | | | | |
| 10 | 자비부담 혹은 타 기관 지원비 | | | | |
| | 합 계 | | | | |

1. 당초예산 : 연구계획서 제출시 소요예산금액과 일치되게 작성
2. 지출 : 연구수행시 실제 지출한 금액 기재
3. 관련 증빙자료 미비시 연구활동비로 계산되어 세액징수 처리됨
4. 기타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「11」 번 란에 기재하고 정산함.
5. 『교내연구비 정산 세부지침』에 의하여 정산하고, 회의록, 영수증, 지출금액, 세금납부 등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.

붙임 : 회의록, 영수증, 외부 연구보조원 세금징수금액(현금) 각 1부.

20 년 월 일

연구책임자 : (인)

[별지 제5호 서식]

20 학년도 교내연구 계획변경 승인신청서

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|
| 관 리 번 호 | | | | | | |
| 과 제 구 분 | 일반연구(논문, 발표) | | 교재개발연구() | | 특별연구(논문, 발표) | |
| 연구 책임자 | 학과 | | 직명 | | 성명 | |
| 연 구 기 간 |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| | | | | |
| 연 구과제명 (연 구 제 목) | | | | | | |
| 변 경 신 청 사 항 | 연 구 제 목 | | | | | |
| | 연구기간연장 | 년 월 일 까지 | | | | |
| | 게재기간연장 | 년 월 일 까지 | | | | |
| | 기 타 | | | | | |
| 변 경 사 유 | | | | | | |
| <p>위와 같이 교내연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20 년 월 일</p> <p>연구책임자 : (인)</p> <p>대원대학교 총장 귀 하</p> | | | | | | |